

## 과도기 혜택 (Transitional Participation Coverage)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권장하며, 미국 장로교단 관련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연금국이 제공하는 플랜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요약합니다.

### 혜택 요약 (Summary)

Pastor's Participation 에 가입하고 있던 목회자와 신학교 졸업생은 과도기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용기관에서 퇴직하면서 과도기 혜택에 등록하고 가입자 자신이 부담금을 지불하면 대부분의 혜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 은퇴 저축 플랜과 추가 장애 혜택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Pastor's Participation 은 30 일간 무료 의료 혜택을 가입자 혹은 고용기관에게 제공하며, 과도기 혜택으로 자신이 사망장애 혜택을 위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90 일간 무료 사망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도기 혜택은 무료 혜택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24 개월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교회 관련 연구를 하는 가입자나 징계 절차에 관련된 가입자는 더 긴 기간동안 과도기 혜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혜택을 위한 자격이 소멸되면, 가입자는 Medical Continuation 에 등록하거나, 자격이 될 경우 Medicare Supplement 플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Benefits Overview 를 참고하십시오: Medical Continuation and Benefits Overview: Medicare Supplement for Retiring Members. 두 설명서 모두 pensions.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격 (Eligibility)

노회가 자격을 승인하는 신학교 졸업생과 Pastor's Participation 에 들고 있는 가입자는 아래의 경우에 과도기 혜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목회지를 찾고 있을 때;
- 교회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있을 때;
- 징계 절차로 인하여 일시적인 휴직이나 실직이 된 경우입니다.

### 비용 (Costs)

과도기 혜택 부담금은 미국 장로교 목회자 중간 급여나 가입자의 가장 최근 실제 급여 중 가입자가 선택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때, 최소 그리고 최대 급여가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실제 급여에 포함됩니다.

최근 실제 급여가 중간 급여보다 높은 가입자는 어떤 액수에 기준할 지를 주의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 급여에 기준하면, 의료 혜택과 사망 장애 혜택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연금 크레딧과 사망 혜택이 중간 급여에 기준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에 기준한 것보다 낮습니다.

만약 한 목회자가 사임후 무료 의료혜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격이 되는 새 목회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금과 사망장애 그리고 초과 보험과 추가 사망보험 혜택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자신이 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등록 (Enrollment)

가입자는 혜택이 종료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과도기 혜택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금국으로부터 그 날짜가 명시된 편지를 받으면, 그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는 근무한 마지막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기관이 지불하는 혜택 연장을 포함하는 퇴직 계약으로 혜택이 종료되는 날짜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Transitional Participation Coverage Enrollment 양식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 양식은 연금국이 보내는 서류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하여 혜택을 연장하기를 원치 않는 가입자는 양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의료 혜택이나 사망 혜택을 계속하지 않는 가입자는 나중에 연금국을 통하여 Medical Continuation 과 Medicare Supplement 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은퇴자 사망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가입자 (Member Couples)

퇴직한 가입자는 각각 과도기 혜택을 통한 의료 혜택을 선택함으로써 부부 가입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혜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를 통하여 자녀들을 포함하여 의료 혜택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때 부부 가입자로서의 혜택은 없어집니다. 가입자는 과도기 혜택을 통하여 자신이 연금과 사망장애 혜택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퇴직은 자격이 되는 삶의 변화(qualifying life event)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60 일 이내에 초과 보험이나 추가 사망 혜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한 가입자는 가입해 있는 동안 등록한 추가 사망보험 혜택 수준까지는 건강 진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pensions.org](http://pensions.org) 를 이용하거나,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